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21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1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1
제1절 의의	2
제2절 평가절차	2
제2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3
제1절 평가대상 기관	4
제2절 평가지표 체계	4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7
제3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22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23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30
제4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38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39
제2절 후속조치 등	40
[별첨] 기관별 평가편람	42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3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8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3
4. 한식진흥원	58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64
6. 축산환경관리원	70

제 1 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제1절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포괄적 관리·감독권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393호)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 기타공공기관은 훈령 제5조에 따라 2022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 2 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1절 평가대상 기관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 기타공공기관(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국민소통 및 혁신,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참조하여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을 모든 기관에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반영되고,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관계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한다.
-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단, 기관 특성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일부 세부평가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배점은 평가단에서 조정한다.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 평가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조직·인사·재무관리	5	3	2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 계량지표	28	-	28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5	-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 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관별 협업·혁신·시민참여 우수사례의 성과 반영은 2020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최대 1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가산하고, 우수 협조기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최대 0.3 점)한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경영평가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
- 기관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혁신성장 가점’). 혁신성장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그 중대성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위법행위 예시: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
-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 감사원, 주무부처 감사 등에 따른 조치결과
- 경찰 입건, 검찰 기소 등 수사결과
-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국회 등 외부기관의 비위행위 적발 등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① 경영전략과 리더십

(1) 전략기획 [3점]

평가지표	전략기획(비계량 : 3점)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핵심 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 확인

(2) 경영개선 [1점]

평가지표	경영개선(비계량 : 1점)
지표정의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기능조정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확인 ②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3) 리더십 [1점]

평가지표	리더십(비계량 : 1점)
지표정의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주요사업의 핵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주의) * (예) 사회적 책임 반영 및 이행 노력 등 ②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③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1) 일자리창출 [8점]

평가지표	일자리창출(계량 : 3점)
지표정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실적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25.)」上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 ② 일자리 창출 관련 계량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2점)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5~1.5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5~1.5점)
평가지표	일자리창출(비계량 : 5점)
지표정의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예) 비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생명, 안전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②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및 탄력정원제 실시 등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등 비정규직 운용의 적정성, 기관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 달성,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고려

평가지표	일자리 창출(계량 : 3점)
	④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 사내벤처 활성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술혁신, 신규사업 발굴, 협력기업과의 기술 및 성과 공유,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일자리 콘테스트 등), 일자리 관련 공익단체·법인과의 협력 등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평가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1점)
지표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0.0~0.5): 기관 장애인 고용율(%) ÷ 의무고용율(3.4%) × 가중치 *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5 비중을 적용해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0~0.5): 기관 유공자 고용율(%) ÷ 우선고용율(3%) × 가중치
--------	--

평가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2점)
지표정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차별적 요인 배제 등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여부 ②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청년·고졸자) 청년고용 준수 여부, 기관별 고졸 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 채용계획 수립·이행 실적 * (지역인재) 비수도권 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 채용비율 달성 노력 여부 * (장애인) 장애인고용 컨설팅 이행사항 추진 등 장애인(중증 장애인 등) 채용 노력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③ 여성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여성인력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여성관리자: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④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여성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⑤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

(3) 안전 및 환경 [5점]

평가지표	환경보전(비계량 : 1점)
지표정의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2~0.4) * 단, 이행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0.2~0.4) * 단, 구매액이 전체 기타공공기관 평균 실적보다 높을 경우 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구매액 증가 시 만점 부여(환경산업기술원 녹색구매정보시스템) ③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0.5)
평가지표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4점)
지표정의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한파,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재해 및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을 의미
세부평가내용	①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안전점검·진단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이행 실적, 관계자 교육, 안전관련 투자, 관련 예산·조직·인력 현황 등 ②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 ③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운영,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예방 및 임신부·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④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 (예)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에서의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정보보호 피해건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정원) 결과,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조치결과 등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만점 부여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최대 0점 부여 * 중대재해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고 * 안전법령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등 안전법령상의 의무 위반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평가지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 2점)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2점) * 산출방법: 기관별 실적 ÷ 자체평가 기준 × 가중치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4~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4~0.6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5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평가지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비계량 : 1점)			
지표정의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이용(중소기업에 어린이집 개방 등) 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물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등			
	②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선지급률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금지킴이 활용, 직불 조건부 발주, 표준계약서 활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 여부,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행 등			
	③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 성과공유제 활성화,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 확대, 판로지원, 핵심기술 보호, 공동 연구개발 확대 노력, 동반 해외진출 수출 확대 노력, '동반성장 평가 결과(중기부)' 등			
	④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5) 윤리경영 [3점]

평가지표	윤리경영(비계량 : 3점)
지표정의	경영활동 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갑질 근절방안 마련 이행, 비윤리적 행위신고, 교육 실적, 회계신뢰성 제고 등 ②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 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③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 자율준수체계, 윤리·준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내부 견제활동 실적 및 성과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감점)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3점)

③ 국민소통 및 혁신[5점]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평가지표	혁신노력 및 성과(비계량 : 3점)
지표정의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1점)
세부평가내용	① 혁신 목표가 기관의 비전·전략체계와 잘 부합하고 혁신 전략과 과제가 혁신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③ 혁신추진조직 구축, 혁신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④ 대내외 혁신네트워크 구축, 혁신 아이디어나 우수과제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정의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1점)
세부평가내용	①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로 국민참여 기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③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운영 웹사이트 및 대국민 홍보 콘텐츠 운영점검(예, 웹사이트 독도·동해 표기 오류 점검 등) * 경영공시 우수공시기관 등 지정 ④ 규제혁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 및 적극행정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과 성과
지표정의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1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과

(2) 국민소통 [2점]

평가지표	국민소통(계량 : 2점)
지표정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다.(1점)
세부평가내용	① 평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와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 농식품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해당 지수를 활용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이상 우수 기관은 8:2, 85점이상 양호기관은 7:3, 80점이상 보통기관은 6:4, 80점미만 미흡 기관은 5:5 ② 고객만족도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100 - (90 - \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times 2$ * 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③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의 전년대비 향상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 전년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점 만점으로 함 * 기준점수는 90으로 하되 전년도 조사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조사결과를 사용 ④ 신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기관은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로만 산출
지표정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1점)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정보공시 점검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② 세부평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 벌점 없음: 1.0점, 벌점 0.1~10.0점: 0.834점, 벌점 10.1~20.0: 0.667점, 벌점 20.1 이상: 0.5점

④ 조직·인사·재물관리 [5점]

(1) 조직·인사 일반 [2점]

평가지표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비계량 : 2점)
지표정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출연·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출연·출자 시 정부 사전 협의 등 적정절차 준수 여부,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개선·구조조정 노력 및 성과 ④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⑤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⑥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의 운영,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 승진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기반 구축, 순환보직 원칙 수립 등 ⑦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이용률,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헌혈 공가 도입 여부 등

(2) 재무예산 운영·성과 [3점]

평가지표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1점)
지표정의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 사업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신규·폐지 사업 선정 시 기준 수립 등 타당성 확보 노력, 사업 예산구조 변경 등) ②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성과, 공정한 계약 체결 등

평가지표	재무예산 운영·성과(계량 : 2점)
지표정의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효율성 등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세부평가지표는 재무예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사업비집행률 등의 지표 중 각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② 세부평가지표의 예시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본}}$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text{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사업비집행률 이외의 세부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 [8점]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평가지표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4점)
지표정의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2점) - 직무가치,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노력 및 성과 * 정규직 전환자, 신규입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적용 노력 등 - 기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 합리적인 직무평가 결과의 반영, 지나친 연공성 개선 노력 및 성과 * 합리적인 직무분석·평가·관리 여부 등 * 연공성에 의한 급여비중이 감소하였는지 또는 감소하도록 보수체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②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여부(1점) -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실적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여부 ③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1점)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달성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 (중소·벤처기업 지원근무 실적 등), 복무 성과관리 등 인력관리의 적절성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채용조달 계획의 적절성

(2) 총인건비 관리 [2점]

평가지표	총인건비관리(계량 : 2점)
지표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 $\text{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 총인건비 인상률 = ② 총인건비의 정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평가지표	노사관계(비계량 : 2점)
지표정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②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2. 주요사업 관리와 성과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28점]

평가지표	주요사업 (계량)
지표정의	주요사업별 경영성과가 목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성과지표는 각 사업별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계량지표는 원칙적으로 투입지표(input)가 아닌 성과지표(outcome)로 설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산출지표(output)도 가능 ③ 각 사업별로 1~3개 수준의 세부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점]

평가지표	주요사업(비계량 : 15점)
지표정의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 *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집행 성과 환류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감안하여 평가 ⑤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③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12점]

평가지표	주요사업 지표구성 적정성(비계량 : 12점)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평가한다.(9점)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지표정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한다.(3점)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β분포, 목표대실적 등 평가방식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일반적으로 “목표대실적”은 난이도가 낮은 평가방식에 해당) *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방식의 경우, 적용된 중장기목표수준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 사업환경, 가용자원 등 대내외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해외사업의 경우, 대상국과의 외교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3. 혁신성장 가점

평가지표	혁신성장(비계량 : 최대 1점)
지표정의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8대 선도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기술·제품 구매, 우수 소프트웨어(우수조달 제품 등) 구매 실적,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노력 등 **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②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기관 생산성·업무 효율 향상(혁신기술: IoT기술, 드론, 센싱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개방 및 품질관리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기회 제공 등 ④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인력양성, 신산업분야 R&D 활성화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제공, 마케팅·해외 진출 지원, 스타트업 지원, 사내벤처운영 등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을 활용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⑤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혁신기술·제품 구매(시제품 구매), 우수 소프트웨어(우수조달제품 등) 구매 실적, 혁신조달플랫폼에 도전적 수요제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기관 참여,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 확정 등

4.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지표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비계량 : 최대 3점)
지표정의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예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기관 보유마스크 긴급 배부, 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수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예시) * 코로나19 감염전담병원 운영, 임시검사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기관 시설 제공,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 공공기관 先결제-先구매 추진 등 ③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방안」(20.8.20일) 등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정책에 따른 주요과제 등

제 3 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구분	등급	평점	비고
A등급	A ⁺ A ⁰	100~9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년도 평가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B등급	B ⁺ B ⁰	80~7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경우 등
C등급	C	6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보통인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거의 동일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과 거의 동일한 경우 등
D등급	D ⁺ D ⁰	50~4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 - 과거수준의 실적에 약간이라도 미달하거나,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E등급	E ⁺ E ⁰	30~2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등

-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비계량지표 중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1개 이상 기관에 동일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기관간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2. 계량지표 평가방법

- 계량지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평가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계량지표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 (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목표 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글로벌 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 등을 적용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수행 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 중기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스 등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Ⅰ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준치는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향지표는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으로 하고 하향지표는 최소값으로 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한다.
-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 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90%, 최저목표는 기준치 × 120%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인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120%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80%로 적용한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1×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표준편차 } S = \sqrt{\sum_{i=1}^n \frac{(Y_i - \bar{Y})^2}{n}}$$

Yi : i연도의 Y값
 $\bar{Y}$: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되지만 기본득점 20점을 적용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평가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표준편차 극단치의 처리방법

1) 표준편차의 계산

-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단치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 이하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준치의 조정

- 상기 절차에 따라 극단치로 판명된 경우 극단치가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치를 조정한 후 득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는 직전 4개년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다만, 극단치가 직전년도(t-1) 실적치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와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를 계산하되, 직전년도 실적치의 계산 시 상향목표는 직전 전년도(t-2)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상한으로, 하향목표는 직전 전년도(t-2) 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하한으로 하여 산출한다.

*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치인 경우 기준치의 계산

구분	기준치의 계산	
극단치가 (t-1)인 경우	상향지표	$\max \left\{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5개년)} \\ (t-1)(t-2)(t-3) \text{ 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right\}$
	하향지표	$\min \left\{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5개년)} \\ (t-1)(t-2)(t-3) \text{ 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right\}$
극단치가 (t-2)또는(t-3)인 경우	상향지표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하향지표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2 목표대실적 평가

-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한다.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text{목표}}$$

- 목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상향목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하향목표)로 하여 목표달성도별 평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begin{aligned} & \circ \text{상향목표} : 20 + 80 \times \frac{Y}{100} \\ & \circ \text{하향목표} : 20 + 80 \times \frac{1-Y}{100} \end{aligned}$$

주 : Y = 평가년도의 목표달성도

3]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

- 글로벌 실적비교의 평가방법은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수준과의 격차, 점유율 등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한다.

4]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 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장기 추세선상의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left[\left(\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right) \times a + \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 \right) \times (1-a) \right]$$

* a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1-a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산출값 상한과 하한은 각각 1과 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 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시 반영 비중은 50%:5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업무 및 사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영비중을 달리 적용한 경우(50%:50%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해당 반영 비중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3년 평균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최초 도입 시 최근 3년간 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장기 추세선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근 2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할 수 있다.
 - 장기 추세선은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수준(B) 및 목표달성기간(n)을 고려하여 산출 하되 3년 단위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주무기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준목표, 중장기 목표수준 및 목표 달성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기준목표(A)는 평가지표의 최초 개발 시에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적치를 적용 한다. 다만, 3년 단위로 장기 추세선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산술평균과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를 산술평균하여 기준목표를 조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목표(B)는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으로 설정하거나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준치는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로 하며 단위목표(α)는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B)간 차이를 목표달성기간(n)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목표달성기간(n)은 (중장기 목표 달성 예상연도-기준목표 연도)로 산출한다.
- $$\text{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ext{기준목표}(A)}{\text{목표달성기간}(n)} \right|$$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선형의 장기추세선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기준목표, 단위목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한다.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a)도 조정하여 평가한다.

$$\text{조정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1)\text{기준목표}(A')}{\text{잔여목표달성기간}(n')} \right|$$

-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의 수준, 정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 불가피하게 지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 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하며, 하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한다.
* 단위목표 = |{(변경된 중장기목표 - 종전 중장기목표) / 잔여기간}|
- 단,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목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중장기 목표)으로 하고, 단위목표는 최근 개선 추세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5 기타 평가방법

- ‘총인건비관리’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하되, 목표는 「’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0.9%)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초과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 이하(0.945%)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2점, 5% ~10% 이하(0.99%)의 경우 1점, 10% 초과하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계량항목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 비중은 각각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기관이 설정하되, 각 지표의 주어진 총점을 준수한다.
- 기관의 특성상 특정 비계량·계량지표(또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평가요소)의 가중치는 결측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다음에 제시된 공통적용사항은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인건비의 정의를 참조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 : 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 :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 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위의 공통산식이 아닌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2) 총자산

-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생산성’과 ‘총자산 회전률’, ‘ROA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인해 총자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생산성, 총자산회전율 등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나 ‘EBITDA 대 매출액’ 지표 등과 같이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지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3) 순사업비

-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의 평가대상인 순사업비는 총수익에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총수익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사업수익)과 영업외수익(사업외수익)의 합계
 - 인건비 :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인건비(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일반관리비 : 계량관리업무비 지표의 평가대상인 관리업무비(인건비에 포함된 항목은 제외)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순사업비 산출 시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거나 일시적 발생, 사업중단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산요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비

- ‘사업비집행률’ 지표의 평가대상인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자본예산의 합계로, 총 세출예산(자본예산 포함)에서 인건비(관리업무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 경비 및 사업비성 경비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자체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포함되며, 직접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그 인건비는 제외한다.
 - 직접사업비는 사업비 예산집행액 중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정부 출연 또는 보조로 인한 특정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업활동의 산출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업부서의 비용을 말한다. 또한, 사업비 예산집행액에서 사업비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와도 동일한 개념이다.
- 사업비 예산현액은 사업비 및 자본예산과 관련한 세출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예산의 전용 등 증감액 + 국가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지출액으로 하며,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은 낙찰차액 및 기관 내부재원 조성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절감액은 제외한다.
- 사업비 집행액은 사업비예산현액 중 집행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세출예산서에 별도의 사업비 항목이 없고 인건비와 경비만이 있거나, 사업비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가 사업비성 경비에 해당되어 직접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체 예산을 사업비로 본다.

(5) 인건비

-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포함한다.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의 정의는 「'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과 「'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최초지정된 연도에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근무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포함하되,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대상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는 총인건비인상률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내의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 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6)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군입대·육아휴직 대체 충원자와 휴직자가 중복될 경우, 한시적(2년)으로 대체 충원자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노동생산성 등 지표의 점수 산출시) 비교 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2. 평가방법 적용요령

(1) 지표값

- 지표값은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수수료,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이 가격결정이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평가항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불변화 지수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국민총량지수와 기관개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한 지수를 사용한다.
- 불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연도 실적치를 기준연도의 불변화지수로 나누어 불변 실적치로 구한다. 구체적인 불변화 방법은 각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2) 통제불능성의 판단

- 통제불능성은 지속가능성, 예측성, 반복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 (예시) 임시거래의 투자자산처분 손익 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가감하여 평가하되, 동일사항에 대해 평가에 기반영된 사항은 실적치의 연속성, 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 유지
-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대외관계의 변화, 전염병, 상품·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따라 부채증가 등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평가지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매출액, 자산, 부채, 관리업무비, 금융비용, 평균인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성과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경우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시점에서 조정하지 않은 통제불능사유를 발생 이후 시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이중조정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영실적 조정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다.
-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간 연관성이 있고, 경영실적이 기준치 대비 2×표준편차 이상, 또는 기준치대비 20%이상 감소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결측으로 처리한다.
-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간 연관성이 있고, 경영실적이 기준치 대비 2×표준편차 미만, 또는 기준치대비 20%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하되, 유형별로 적절한 방식을 적용한다.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총인건비 관리’는 코로나19 영향을 조정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총인건비 인상을 템플릿’을 적용한다.

< (예시) 코로나19 영향의 유형별 조정 방안 >

유형		내용	보정 방안
① 특정 기간의 영향		- 일정 기간 휴관·휴업 및 제한	해당 기간을 제외한 후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
② 특정 사업의 영향		- 일부사업 중단 및 제한 - 공간, 시설 등의 휴관 및 제한, 대면 사업 수행	해당 사업을 제외한 후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실적으로 환산
③ 환경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객관적인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목표 변경 등 보정
	① 연구 성과 관련	- 학술적 성과: 국내외 논문수, 학술발표 실적 등	- 인문사회분야: 연구재단의 2021년도 관련 실적에 따른 보정
		- 경제적 성과: 기술료, 사업화 실적 등	- 전체 산업(혹은 관련 산업)의 관련 실적과의 비교를 기초로 보정
		- 인력 양성 성과: 졸업, 취업 및 창업 등	- 전체 취업 및 고용 현황 혹은 군별(대상, 산업 등) 취업 및 고용 현황을 반영한 보정
	② 해외 관련	- 수출입(물적) 관련 지표	- 전체 산업(혹은 관련 산업)의 수출입 실적 혹은 글로벌 실적과의 비교를 기초로 보정
		- 수출입(콘텐츠 등) 관련 지표	- 전체 산업(혹은 관련 산업)의 수출입 실적 혹은 글로벌 실적과의 비교를 기초로 보정
	③ 교육 관련	- 교육 프로그램 이행 및 이수 실적 등	-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행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
	④ 취업 및 고용 관련	- 취업 및 고용 실적	- 전체 취업 및 고용 현황 혹은 군별(대상, 산업 등) 취업 및 고용 현황을 반영한 보정
	⑤ 경기 변동 관련	- 매출 관련 지표	- 전체 경기 상황 혹은 해당 분야 경기 상황을 반영한 보정
		- 창업 관련 지표	

- (3) 목표부여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당시 근거로 한 향후 연도 실적 예상치(기관측 제시)가 왜곡 제시되었음이 추후 평가시점에서 확인될 때에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당초 목표치 혹은 목표부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글로벌실적비표 평가방법은 기관이 작성·제출한 실적보고서상에 글로벌 경쟁기관 등의 최근 실적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당해 연도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동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5)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으로 인해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량평가방법 및 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6) 경영실적의 연속성·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소송 관련 충당금 전입액 등은 확정판결시까지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회계기준으로 IFRS를 도입한 기관은 IFRS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연결재무제표 대신 기존 개별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평가용 IFRS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의 영향을 받는 지표를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도입 첫해에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과거 5개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며, 차년도에도 동일한 표준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
- 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공사부담금	○ 자산차감으로 계상하던 공사부담금을 IFRS 도입에 따라 이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이연부채 계상에 따른 영향은 제외하여 평가한다.
민간투자사업	○ IFRS 민간투자사업 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건설수익(매출액)과 건설원가(매출원가)가 각각 동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동 건설수익(매출액)과 건설원가(매출원가)는 제외하여 평가한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	○ 총인건비 인상을 평가시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등)는 발생주의가 아닌 과거 K-GAAP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확정채무)로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종업원 저리대여금	○ 종업원 저리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종업원급여'는 총인건비 인상을 평가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자회사에 대한 금융보증 계약	○ 자회사를 위한 금융보증계약을 체결(지급보증 제공)시, IFRS에 따른 금융보증채무(부채)는 평가시 제외하고, 실제 대 지급 시점에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사업수익, 사업비용의 측정	○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식의 분모, 분자가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경우,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영향은 수익과 비용에 각각 포함하거나 각각 제외하여 평가한다. (예) 부대사업효율성 지표(산식 = 부대사업수익 ÷ 부대사업비용)를 평가함에 있어 IFRS에 따라 (대상 사업의) 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이자비용'과 '임대료수익(부대사업수익)'이 각각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식의 측정은 '이자비용'도 부대사업비용에 포함하거나, 임대료수익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여 지표 산식 측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8)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력 등은 동 사업의 성과 발생 이후(사업추진 2년 후, 3년차부터 반영)부터 평가할 수 있다.
- (9) 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운용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기관별 편람에 이를 명시한다.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이 증가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량지표는 증원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 산정한다.

제 4 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 기관 실적 평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등급구간을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등 급	종합점수	수 준 정 의
탁 월 (S)	100점 ~ 90점 이상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 수 (A)	90점 미만~8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 호 (B)	80점 미만~7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 통 (C)	70점 미만~6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 흡 (D)	60점 미만~50점 이상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5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제2절 후속조치 등

가.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으로 기관장·상임이사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편,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임기간에 따른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허위·오류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서 조치

-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 및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고의성	중대성 정도*	결과처리
고의적 (허위)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한 값에서 종합평가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경미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
비고의적 (오류)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및 해당 실적 수정
	경미한 사항	- 해당 실적 수정 및 그에 따른 점수 보정

* 중대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적용함.

라.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상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용한다.

별 첨

기관별 평가편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1. 가축방역사업	24	8	16
	(1) 시료채취(4대 질병) 달성률	8	-	8
	(2) 시료채취(AI) 달성율	4	-	4
	(3)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율	4	-	4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2. 축산물위생사업	19	7	12
	(1) 축산물 위생사업	7	-	7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5	-	5
	(3)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5점]

- (1) 전략기획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경영개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리더십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 (1) 일자리창출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안전 및 환경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국민소통 및 혁신 [5점]

-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재무예산 관리 [5점]

-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조직 · 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총인건비관리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가축방역사업 [17점]

(1) 시료채취(4대질병) 달성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8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4대 질병)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료채취 목표 달성도 = (시료채취 실적 / 목표(계획) 채취수) x 100 * 목표(계획) 채취수 : 4대 질병 시료채취 계획 채취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시료채취 실적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시료채취 계획량은 농식품부 계획*을 참조, '두수'를 기준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 4대질병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시료채취(AI) 달성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예찰 검사 추진계획'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AI)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료채취(AI) 목표 달성도 = (시료채취 실적 / 목표(계획) 채취수) x 100 * 목표(계획) 채취수 : AI 시료채취 계획 채취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시료채취 실적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시료채취 계획량은 농식품부 계획*을 참조하고, '점수'를 기준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예찰검사 추진 계획」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율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예찰실시결과 보고 목표 달성도 = $\frac{\text{예찰실시결과 보고실적}}{\text{목표(계획)건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 실적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예찰실시결과보고서 목표(계획)건수는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의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한 사업계획임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8점)

② 축산물위생사업 [12점]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7점)

정 의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text{기준치} + 1 \times \text{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text{기준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 향상도 = $\frac{\text{이상보고 건수}}{\text{도축검사두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폐기건수 및 검사두수는 위생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적치에는 포유류 실적과 가금류 실적을 합산 - 도축장구조조정에 따른 도축장수 감소,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5점)

정 의	현물검사(수입축산물) 이상보고 향상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5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 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 (이상보고건수/현물검사건수)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이상보고건수는 위생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구제역, HPAI, BSE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7점)

③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1. 농업정책자금 관리	15.5	5.5	10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8	-	8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2	-	2
	(3)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5	5.5	-
	2. 농업재해보험 관리	15.5	5.5	10
	(1)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6	-	6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4	-	4
	(3)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5	5.5	-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2	4	8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4	-	4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4	-	4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5점]

- (1) 전략기획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경영개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리더십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 (1) 일자리창출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안전 및 환경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국민소통 및 혁신 [5점]

-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재무예산 관리 [5점]

-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조직 · 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총인건비관리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업정책자금 관리 [15.5점]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8점)	
정 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검사 실시기관 비율을 평가 * (산식) 검사 실시기관 비율 = $\frac{\text{검사 실시기관 수}}{\text{검사 목표기관 수}} \times 100$ ** 검사: 정기·일반·비대면·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 *** 검사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정원 × 최근 5년간 평균 1인당 검사 기관수)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2점)	
정 의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에서 취급한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중점점검 대상기관 관리 노력을 평가 * (산식)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율 = $\frac{\text{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기관 수}}{\text{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times 100$ ** 검사: 정기·일반·비대면·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 ***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검사계획 수립 기준
(3)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5점)	

② 농업재해보험 관리 [15.5점]

(1)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 의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 $\sum$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 상품·제도개선 건수는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상품약관, 사업약정서 등에 반영된 건 및 개선이 확정된 건을 의미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4점)

정 의	보험사업자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점검 실적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 기준연도 사업점검 횟수 * 경영평가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를 수행 실적으로 산정 ** 우리 원이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를 위탁받은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그 해에 실시한 사업점검 수행 실적

(3)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5점)

③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2점]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지속적인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물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지침·운용계획 상 목표비율 대비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목표달성도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 100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모태펀드 추가조성액 ** 목표비율 =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계획(정기) 상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운용지침 상 모태펀드 추가조성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운용지침·계획상 조성액 및 출자목표액 변경 시, 변경액 적용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유망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유치 역량 제고 성과측정을 위해 정부의 연간 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투자지원 사업계획 상 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 (A + B) ÷ 2 * A는 {100 × (모태펀드 맞춤형 컨설팅 수료 건수) ÷ (연간 모태펀드 운용계획 상 맞춤형 컨설팅 수료 목표 건수)} 와 100% 중 작은 값 ** B는 {100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상 클라우드펀딩 성공 목표 건수)} 와 100% 중 작은 값 ※ 산출 시 고려사항 : 운용·기본계획상 목표 변경 시 변경 건수 적용하며, 운용·기본계획 상 목표 미지정 시 타 운영계획 등으로 대체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4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1.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29	9	20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5	-	15
	(2) 안전사고 예방률	5	-	5
	(3) 선박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9	-
	2. AGM 예찰 방제	7	3	4
	(1) AGM 예찰 활동률	4	-	4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3.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7	3	4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4	-	4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5점]

- (1) 전략기획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경영개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리더십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 (1) 일자리창출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안전 및 환경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국민소통 및 혁신 [5점]

-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재무예산 관리 [5점]

-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조직 · 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총인건비관리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선박 아시아메미나방(AGM) 검사 [29점]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15점)

정 의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상대국에서 신속 통관을 위하여 상대국 AGM 검출 예방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검출 예방률= $\left(\frac{\text{평가년도 상대국 AGM검출률}}{\text{최근 3년간 상대국 AGM검출률}}\right) \times 100$ ② 상대국 AGM 검출률 = $\left(\frac{\text{국내 AGM발견 실적} - \text{상대국 AGM검출 실적}}{\text{국내 AGM발견 실적}}\right) \times 100$ ③ 국내 AGM 발견 실적 : 국내 선박검사시 AGM(성충, 난괴)이 발견된 선박의 수이며, 동일한 선박이어도 「선박에 대한 AGM 검사 규정, 별표 5」에 따라 “AGM 제거 요청서”를 발급받고 재검사를 실시한 선박에서 AGM이 재발견 될 경우 중복 집계할 수 있음 ④ 상대국 AGM 검출 실적 : 국내에서 선박 AGM 검사 후 미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20.9.28일 이후)에 입항시 AGM 난괴가 검출되어 통보된 선박의 수이며, 선박 1척당 AGM 난괴 검출 정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AGM 난괴 검출 정도에 따른 가중치 <table><tr><td>난괴(점)</td><td>1~10</td><td>11~20</td><td>20이상</td></tr><tr><td>가중치</td><td>0.5</td><td>1</td><td>1.5</td></tr></table> * 국내 선박 검사 이후 상대국[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20.9.28일 이후)] 입항전 AGM 분포국가를 경유한 선박은 제외함	난괴(점)	1~10	11~20	20이상	가중치	0.5	1	1.5
난괴(점)	1~10	11~20	20이상						
가중치	0.5	1	1.5						

(2) 안전사고 예방률(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 의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사고 예방률(%) $= \left(1 - \frac{\text{안전사고발생건수}}{\text{선박검사건수}(100\text{건})}\right) \times 0.5 + \left(1 - \frac{\text{안전사고 발생 인원}}{\text{선박검사 근무 인원}}\right) \times 0.5$ ② 안전사고 사고 발생 건수 : "AGM 선박검사 안전수칙 지침"에 따른 선박 검사시 안전과 관련된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 건수의 합(안전사고 보고서 제출 건수)이며, 사고자 상해에 따라 가중치* 적용(경상 1, 중경상 1.5, 중상 2, 사망 4). 만약, 1건의 사고에 2명 이상의 사고자 발생시 상해정도가 심각한 사고자 적용. ③ 안전사고 발생인원 : "AGM 선박검사 안전수칙 지침"에 따른 선박 검사시 안전과 관련된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자의 합(안전사고 보고서 제출 건수)이며, 사고자 상해에 따라 가중치* 적용(경상 1, 중경상 1.5, 중상 2, 사망 4). ④ 선박검사 근무 인원 : AGM 선박 검사를 위해 근무한 인원의 합 (지역 사무소 인원 + 평가년도 AGM 검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 1. 경 상 : 4주 이하의 통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 2. 중경상 : 4주 이상의 통원진료 혹은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 3. 중 상 : 뇌 등 생명 유지의 위험이 있는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중요 부위 상실이나 변형이나 신체 주요기능 상실 이상

(3) 선박 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9점)

② AGM 예찰 방제 [7점]

(1) AGM 예찰 활동률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AGM 고위험기간 중 항만 및 항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AGM 예찰 활동률(%) $= \left(\frac{\text{평가년도 AGM 트랩설치수}}{\text{목표 트랩설치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평가년도 AGM 트랩 조사수}}{\text{목표 트랩 조사수}} \times 0.5 \right)$ * 목표 트랩 설치수 = 3년치 평균 예찰트랩 설치수 * 목표 트랩 조사수 = 3년치 평균 예찰트랩 조사수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3점)	

③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7점]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실적과 병·해충·금지품 발견을 통해 검역장소 관리 성과를 평가 한다.
목 표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검역장소 관리 성과(%) = $\left(\frac{\text{평가년도 수입재식용검역장소관리업무실적}}{\text{최근3년간 평균 수입재식용검역장소관리업무건수}} \times 0.3 \right) + \left(\frac{\text{평가년도 병해충금지품발견건수}}{\text{최근3년간 평균 병해충금지품발견건수}} \times 0.7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입재식용검역장소관리업무 실적 : 식물검역관리인 세부운영 규정 별지 2호 “재식용식물입고확인 신청서”서식에 따라 신청된 관리 건수 · 해외 병·해충·금지품 발견 건수 : 식물검역관리인 세부운영규정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발견 건수이며, 컨테이너 1개에서 나온 병·해충·금지품 실적을 1로 한다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3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식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충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1.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14	4	10
	(1)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 성과	3	-	3
	(2) 한식정보분석 조사·연구 결과 활용도	3	-	3
	(3) 한식당 지원 성과	4	-	4
	(4) 한식진흥 기반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2.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10	3	7
	(1)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 경제 촉진	3	-	3
	(2)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 성과	4	-	4
	(3)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3. 전문인력양성 실적	9	4	5
	(1)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5	-	5
	(2) 전문인력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4. 한식 해외확산 실적	12	4	8
	(1)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8	-	8
	(2) 한식 해외확산 실적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5점]

- (1) 전략기획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경영개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리더십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 (1) 일자리창출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안전 및 환경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국민소통 및 혁신 [5점]

-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재무예산 관리 [5점]

-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조직 · 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총인건비관리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14점]

(1)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확산 및 활용 노력에 의한 한식 인지도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최대 120% 최저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한식 인지도 확산 성과 = $\frac{(\text{한식 인지도 조사 결과} \times 0.5) + (\text{한식 콘텐츠 노출도} \times 0.35) + (\text{한식 콘텐츠 배포 수} \times 0.15)}{}$ ② 한식 인지도 확산 실적은 1) 한식 인지도 조사 결과, 2) 한식 콘텐츠 노출도, 3) 한식 콘텐츠 배포 수에 대한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매년 시행하는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인지도 등) 2) 홈페이지를 통한 한식 콘텐츠 페이지뷰 수 + 진흥원 SNS 게시물 조회 수 + 한식 언론노출 수 3) 진흥원 SNS, 온라인 매거진 등 한식 콘텐츠 배포 수
(2)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결과 활용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진흥원이 추진한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결과 활용도 = $\frac{(\text{조사연구결과 인용건수} \times 0.7) + (\text{조사연구결과 배포 수} \times 0.3)}{}$ ②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결과 활용도 실적은 1) 조사연구결과 인용건수, 2) 조사연구결과 배포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조사연구결과 보고서 당해연도 인용건수 2) 조사연구결과 온·오프라인 배포 실적(유관기관 R&D부서 등 관계자 대상 이메일 발송 수 +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대상 결과보고서 책자 배포 수 등) * 조사연구결과 배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향후 조사연구결과 수요도를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

(3) 한식당 지원 성과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한식당 지원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 결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한식당 지원 성과 = (한식당 지원 사업 수혜대상 만족도 점수x 0.7) + (한식당 지원 수x 0.3) ② 한식당 지원 실적은 1) 한식당 지원 사업 수혜대상 만족도점수, 2) 한식당 지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당해연도 지원받은 한식당 만족도 점수 2) 당해연도 지원받은 한식당 수

(4) 한식진흥 기반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4점)

②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10점]

(1) 음식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국내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촉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경제 촉진 = (음식관광상품 판매 지원 사업 수요도 x 0.7) + (음식관광 연계 업체 컨설팅·지원 수 x 0.3) ② 음식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판매 지위너 사업의 실 수요도를 세부 산식으로 산정, 1) 음식관광상품 판매 지원 사업 수요, 2) 음식관광 연계 업체 컨설팅·지원 수에 대한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연초 계획한 지원 목표 한식당 수 대비 한식 소비 촉진 행사(K-Culture 페스티벌 연계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 수 2) 식사문화개선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 한식판매업체 컨설팅·지원 수

(2)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한식문화관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도 = $\frac{(\text{한식체험프로그램 체험객 만족도 점수} \times 0.7) + (\text{한식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체험객 비율} \times 0.3)}{(\text{한식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체험객 비율} \times 0.3)}$ ②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도 실적은 1)한식체험프로그램 체험객 만족도 점수, 2) 한식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체험객 비율 확대에 대한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한식체험프로그램 체험객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2) 한식체험프로그램 전체 체험객 중 외국인 체험객 비율

(3)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3점)

③ 전문인력양성 실적 [9점]

(1)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한식전문인력 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한식전문인력 지원성과 = $\frac{(\text{한식전문인력 지원사업 고객 만족도 점수} \times 0.7) + (\text{한식전문인력 지원수} \times 0.3)}{(\text{한식전문인력 지원수} \times 0.3)}$ ② 한식전문인력 지원 실적은 1) 한식전문인력 지원 대표 사업 고객 만족도 점수, 2) 한식전문인력 지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1) 한식전문인력 지원 대표 사업 고객 만족도 점수 2) 전년대비 한식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직접·간접 수혜자 수 증가율

(2) 전문인력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4점)

④ 한식 해외확산 실적 [12점]

(1)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8점)																			
정 의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식 콘텐츠 개발·배포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기준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 0.5) + (한식프로그램 수요자 수 × 0.5)																		
	②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실적은 1) 해외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성과(운영도시별 가중치 부여), 2) 해외 한식프로그램 수요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온라인 한식프로그램 확산 도시 수(1년차 계획 지표)																		
	2) 온라인 한식프로그램 수요자(교육생 등) 수(1년차 계획 지표)																		
*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																			
<table><tr><td>1년차</td><td>⇒</td><td>2년차</td><td>⇒</td><td>3년차</td><td>⇒</td><td>4년차</td><td>⇒</td><td>5년차</td></tr><tr><td>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확산</td><td></td><td>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td><td></td><td>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대상국가 확산</td><td></td><td>유관 사업 연계 통합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td><td></td><td>통합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운영·확산</td></tr></table>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확산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대상국가 확산		유관 사업 연계 통합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통합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운영·확산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확산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대상국가 확산		유관 사업 연계 통합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개발·운영		통합 온·오프라인 한식프로그램 운영·확산											
* 유관사업: 한식인력 해외 파견 사업(한식전문강사 해외 교육기관 파견, 해외 호텔 연계 한식인력 진출 사업 등)																			

(2) 한식해외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4점)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1.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1	3	8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8	-	8
	(2)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2. 기업 성장지원 사업	24	10	14
	(1)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6	-	6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5	-	5
	(3)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3	-	3
	(4) 기업 성장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10	-
	3. 新인프라 구축 사업	8	2	6
	(1)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5	-	5
	(2) 안전사고 예방 실적	1	-	1
	(3) 新인프라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2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5점]

- (1) 전략기획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경영개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리더십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 (1) 일자리창출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안전 및 환경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국민소통 및 혁신 [5점]

-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재무예산 관리 [5점]

-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조직 · 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총인건비관리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1점]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8점)	
정 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노력을 통한 분양면적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A) = (분양실적/분양목표) × 100 ② 분양실적은 분양면적 실적을 의미함 - 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중 계약 해지업체는 분양실적에서 제외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름
(2)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3점)	

② 기업 성장지원 사업 [24점]

(1)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기업의 R&D, 제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유지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A) = (주요장비 운용률) × 0.6 + (보조장비 운용률) × 0.3 + (상시운용장비 운용률) × 0.1 ② 주요장비 운용률 = $\left(\frac{\text{주요장비 실제 가동 시간}}{\text{주요장비 사용 가능 시간}} \right) \times 100$ - 주요(핵심)장비 : 검사분석·시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필수 장비 등으로 주로 3천만원 이상의 고가장비 (사용가능시간 : 1,920시간=240일×8시간) ③ 보조장비 운용률 = $\left(\frac{\text{보조장비 실제 가동 시간}}{\text{보조장비 사용 가능 시간}} \right) \times 100$ - 보조(기초)장비 : 주요(핵심)장비 가동시 필요에 따라 보조적 역할로 사용하는 장비로 주로 1천만원 내외의 장비(사용가능시간 : 480시간=240일×2시간) ④ 상시운용장비 운용률 = $\left(\frac{\text{상시운용장비 실제 가동 시간}}{\text{상시운용장비 사용 가능 시간}} \right) \times 100$ - 상시운용장비 : 검사분석·시제품 생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장비(사용가능시간 : 8,760시간=365일×24시간) * 보유장비 구분시, ②,③,④의 중복 없음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입주기업에 대한 판매채널, 각종 홍보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A) = (푸드마켓 운영 지원 성과) × 0.4 + (소비자 교류 지원 성과) × 0.6 * 푸드마켓 운영 지원 성과 및 소비자 교류 지원 성과는 각각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푸드마켓 운영 지원 성과 = $\left(\frac{\text{오프라인 푸드마켓 참가기업수}}{\text{3년평균오프라인푸드마켓참가기업수}} \right) \times 100 \times 0.4 + \left(\frac{\text{온라인 푸드마켓 참가기업수}}{\text{3년평균온라인푸드마켓 참가기업수}} \right) \times 100 \times 0.6$ - 온라인 오프라인 푸드마켓 사업에 중복으로 참가한 기업은 그 수만큼 3년 평균 참가 기업 수에도 더하여 계산함. * 해당 요소는 100%를 초과하여 반영될 수 없음. ③ 소비자 교류 지원 성과 = $\left(\frac{\text{국내 박람회 참가기업수}}{\text{국내 박람회 참가가능기업수}} \right) \times (\text{국내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의 적절성}) \times 0.5 + \left(\frac{\text{국외 박람회 참가기업수}}{\text{국외 박람회 참가가능기업수}} \right) \times (\text{국외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의 적절성}) \times 0.5$ - 소비자교류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참가한 기업은 그 수만큼 참가 가능 기업에도 더하여 계산함 - 국내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의 적절성 = $\left(\frac{\text{당해연도 국내 박람회 참가건수}}{\text{3년 평균 국내 박람회 참가건수}} \right) \times 100$ * 해당 요소는 100%를 초과하여 반영될 수 없음. - 국외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의 적절성 = $\left(\frac{\text{당해연도 국외 박람회 참가건수}}{\text{3년 평균 국외 박람회 참가건수}} \right) \times 100$ * 해당 요소는 100%를 초과하여 반영될 수 없음. ※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으로 변경 된 사업(온라인홍보)은 각 홍보 채널을 건수로 계산함 ※ 3년평균 수치값이 산출되기 전('20, '21년)에는 전년대비 올해 실적으로 평가

(3)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연계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A) = $\left(\frac{\text{지원 후 창업 실적건수}}{\text{청년식품창업 Lab팀수}} \right) \times 100$ ② 지원 후 창업 실적 건수는 최근 2년 내(당해연도 포함) 창업대회 수상, 시제품 상품화(품목 제조 신고),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 창업, 보육기관 입주를 의미함.

	- 지적재산권 출원은 0.5건으로 산정, 등록은 1건으로 산정 - 창업대회 수상은 1.5건으로 산정 - 시제품 상품화는 2.5건으로 산정 - 창업은 3.0건으로 산정 - 보육기관 입주는 2.0건으로 산정 ③ 청년식품창업Lab 팀 수는 최근 2년 내(당해연도 포함) 지원받은 팀수(당해연도 하반기 지원받는 팀은 제외)를 의미함.
--	---

(4) 기업 성장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10점)

③ 新인프라 구축 사업 [8점]

(1)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연계 사업추진 공정을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 新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관 목표 및 전략과 부합하는 현재 시점의 주요 사업으로 향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본 지표는 더이상 주요사업 지표로 활용되지 못하며, 정립된 성과창출 프로세스의 결과단계 사업 중 주요사업 지표가 활용될 예정임.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A) = (상반기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 × 0.55 + (하반기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 × 0.45 -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의 경우 매년 구축 내용이 변화하므로 매해 세부지표 구성 요소 및 가중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②상반기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 = (가정편의식 기술지원센터 진척도 × 0.25) + (원료 중계공급센터 진척도 × 0.25) +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진척도 × 0.25) + (청년식품창업센터 진척도 × 0.15) + (기능성원료은행 진척도 × 0.10) - 가정편의식 기술지원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상반기 이행을 실적/당해연도 상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 100 - 원료 중계 공급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상반기 이행을 실적/당해연도 상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 100 -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상반기 이행을 실적/당해연도 상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 100 - 청년식품창업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상반기 이행을 실적/당해연도 상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 100 - 기능성원료은행 진척도 = (당해연도 상반기 이행을 실적/당해연도 상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 100 ③ 하반기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 = (원료 중계공급센터 진척도 × 0.40) +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진척도 \times 0.35) + (청년식품창업센터 진척도 \times 0.15) + (기능성원료은행 진척도 \times 0.10)$ - 원료 중계 공급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하반기 이행률 실적/당해연도 하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times$ 100 -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하반기 이행률 실적/당해연도 하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times$ 100 - 청년식품창업센터 진척도 = (당해연도 하반기 이행률 실적/당해연도 하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times$ 100 - 기능성원료은행 진척도 = (당해연도 하반기 이행률 실적/당해연도 하반기 수립된 이행률 목표) $\times$ 100
--	---

(2) 안전사고 예방 실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1점)

정 의	인프라 구축 공정 과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 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사고 예방 실적 = 100점 - ∑사고 실적 점수(건별)											
	② 사고 실적 점수											
	사고 발생 구분은 해당 연도에 新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 보험금이 청구된 건별로 한다.											
	- 사고발생점수는 인적피해 수준과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 금액을 감안하여 유형별 5단계로 가중점수를 부여해 산출한 점수의 합계로 한다.											
	<table><tr><td>구분</td><td>5단계</td><td>4단계</td><td>3단계</td><td>2단계</td><td>1단계</td></tr><tr><td>사고 발생 점수</td><td>30~100점</td><td>20점</td><td>10점</td><td>3점</td><td>1점</td></tr></table>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사고 발생 점수	30~100점	20점	10점	3점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사고 발생 점수	30~100점	20점	10점	3점	1점							
	- 1단계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단계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3주 초과 8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단계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8주 초과 16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4단계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1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제1급에 준하는 장해가 남아 장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 5단계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1~2명 사망 30점 감점, 3~4명 사망 40점 감점, 5~6명 사망 60점 감점, 7~8명 사망 80점 감점, 9명 이상 사망 100점 감점)											
	* 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제53조 제1항 관련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함.											

(3) 新인프라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2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축산환경관리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1. 축산환경 관리사업	18	6	12
	(1)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	7	-	7
	(2)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 점검률	5	-	5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
	2.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15	5	10
	(1)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6	-	6
	(2)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4	-	4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	10	4	6
	(1)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실적	4	-	4
	(2) 교육·컨설팅 대상자 만족도	2	-	2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5점]

- (1) 전략기획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경영개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리더십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가치구현 [22점]

- (1) 일자리창출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안전 및 환경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국민소통 및 혁신 [5점]

-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재무예산 관리 [5점]

-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조직 · 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 (1) 보수 및 복리후생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총인건비관리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축산환경 관리사업 [18점]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7점)

정 의	농가 스스로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 축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축산농가 5천호를 '22년까지 육성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 (호) = $\frac{\text{농식품부에서 검증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수}}{\text{농식품부에서 검증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으로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가 수 ② 지자체에서 검증·신청한 축산농장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최종검증(현장평가) 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③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선정 ('17.7 ~ '22년까지 5천호 이상 조성) * '22년까지 5천호 이상 조성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호)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도</th><th colspan="4">실적</th><th colspan="2">목표</th><th rowspan="2">합계</th></tr> <tr> <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r> </thead> <tbody> <tr> <td>조성실적 및 목표</td><td>1,023</td><td>777</td><td>792</td><td>1,022</td><td>1,050</td><td>1,050</td><td>5,714</td></tr> </tbody> </table>							연도	실적				목표		합계	'17	'18	'19	'20	'21	'22	조성실적 및 목표	1,023	777	792	1,022	1,050	1,050	5,714
연도	실적				목표		합계																						
	'17	'18	'19	'20	'21	'22																							
조성실적 및 목표	1,023	777	792	1,022	1,050	1,050	5,714																						

(2)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 의	환경개선 대상농가의 단기 이행사항을 지정하고, 농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 $\frac{\text{단기 이행실적 인정건수}}{\text{환경개선 대상농가 단기 이행사항 지정건수}}$ *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지정건수 및 인정건수로 확인 ②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 및 관리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별 단기 이행사항 지정 후 정기점검 및 컨설팅 실시, 대상지역 개선결과 공유 - 환경개선 대상농가의 이행사항에 대해 외부평가단을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농가이행사항 확인 - 대상지역 및 관리대상 농가는 매년 변경 예정(농림부와 협의하여 진행) ③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은 신규 지표로서 매년 목표를 상향('25년까지 80% 이상)해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할 계획임 * ('21) 60% → ('22) 65% → ('23) 70% → ('24) 75% → ('25) 80%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6점)

②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15점]

(1)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6점)

정 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 가동률 제고 등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 $\frac{(\text{당해연도 C등급 시설개소})}{(\text{전체 공동자원화시설 개소})}$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99개소(사업장 기준 84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운영 중임 ② 매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리·분석·보고 - 운영실태 점검은 가동률, 퇴액비 살포실적 및 품질관리,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점검결과에 따른 C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 '19년 축산환경관리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점검결과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매우우수(A, 30%)</td> <td>우수(B, 40%)</td> <td>보통(C, 30%)</td> </tr> <tr> <td>공동자원화 시설</td> <td>25개소(29.4%)</td> <td>34개소(40.0%)</td> <td>26개소(30.6%)</td> </tr> </table> - '20년에 운영실태 평가방식을 변경(상대평가→절대평가)하여 C등급 개선유도 * (A등급) 130점 이상, (B등급) 100점 이상 130점 미만, (C등급) 100점 미만 ③ 점검대상 시설 대비 C등급이하 시설수의 비율은 신규 지표로서 매년 목표 20% 이하로 관리 계획임(자원화시설은 매년 신규시설이 확충되어 목표 자동 상향) * 신규시설 확충 ('20) 3개소→('21) 3개소, 매년 3개소씩 확충 예정(농식품부)				구 분	매우우수(A, 30%)	우수(B, 40%)	보통(C, 30%)	공동자원화 시설	25개소(29.4%)	34개소(40.0%)	26개소(30.6%)
	구 분	매우우수(A, 30%)	우수(B, 40%)	보통(C, 30%)								
	공동자원화 시설	25개소(29.4%)	34개소(40.0%)	26개소(30.6%)								

- '20년에 운영실태 평가방식을 변경(상대평가→절대평가)하여 C등급 개선유도
 * (A등급) 130점 이상, (B등급) 100점 이상 130점 미만, (C등급) 100점 미만
 ③ 점검대상 시설 대비 C등급이하 시설수의 비율은 신규 지표로서 매년 목표 20% 이하로 관리 계획임(자원화시설은 매년 신규시설이 확충되어 목표 자동 상향)
 * 신규시설 확충 ('20) 3개소→('21) 3개소, 매년 3개소씩 확충 예정(농식품부)

(2)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의 화학비료 절감률 조사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 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 \frac{\text{당해연도 참여농가 전체 화학비료 절감실적(백만원)}}{\text{전년도 참여농가 전체 화학비료 사용실적(백만원)}}$
	*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실적은 매년 지자체 또는 위탁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②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지역 내 경종 농가에게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순환농업 실현(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경종농가 경영개선, 토양환경 개선 등의 효과)
	③ 경축순환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절감률은 신규 지표로서 매년 목표 20% 상향해서 관리 계획임
	* ('20) 협력체계 구축→('21) 15%→('22) 18%→('23) 22%→('24) 27%→('25) 32%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③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 사업 [10점]

(1)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실적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이용 등 축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실적(명) = 당해연도 신규 등록인원 *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인원내 해당됨 ②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대책 ('16.12.22, 농식품부) ◇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 * 인력(누계) : ('16) 30명 → ('20) 200명 → ('25) 300명 ③ 기존 기초·심화교육 이수만으로 컨설턴트를 양성했던 방법을 개선하여, '21년부터 민간자격시험(필기·실기)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자를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매년 40명 이상(민간자격 취득자)을 배출할 계획임 【5년간 300명】 - 【현황】 ('17) 76명→('18) 113명→('19) 163명: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계획】(누계) ('21) 40명→('22) 90명→('23) 150명→('24) 220명→('25) 300명 * 축산환경컨설턴트 :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20.11.30.에 등록한 민간자격 취득자(소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교육·컨설팅 만족도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2점)

정 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육·컨설팅 만족도(점) = 당해연도 조사 결과 * 지자체에서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 실시 및 결과 피드백 ② 매년 축산환경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 중임 ◇ '20년 교육 및 컨설팅 실적 * 교육 이수자(488명) : 456명(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교육), 32명(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 컨설팅 실적(566호) : 지자체 요청 축산악취 발생농가(178개소), 축산환경 개선 대상농가(202개소), 축산악취개선지역(10개 지역, 106개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80호) ◇ 매년 교육,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예정 ③ 축산환경 교육·컨설팅 만족도는 신규 지표로서 매년 3점(100점 만점) 상향을 목표로 관리 계획임 * ('21) 80점 (신규)→('22) 83점→('23) 86점→('24) 89점→('25) 92점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4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